

경제 혁신

특허청 *희망의 새시리즈*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www.kipo.go.kr

보도자료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과 장 이인수	042-481-5331
		사무관 윤세균	042-481-8602
	2016년 12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28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창작성 폭넓게 인정하여 디자인등록 쉬워진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은 물품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 * 기능이나 장식적인 것을 가능한 한 제거하여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디자인 양식

-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용이창작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종전에는 하나의 도면에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각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1디자인*으로 인정하였으나, 전체가 아닌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1디자인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디자인등록출원에서 하나의 도면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나타내어야 한다.

- 그리고,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으로 된 것이라도 각설탕, 고휘시멘트와 같이 고정화되어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그 외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종전에는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에 불과한 것은 모두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 이 밖에 기능적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유사여부 판단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하여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창작성의 인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들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혀 나갈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하여 심사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디자인심사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심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등록요건 판단기준 구체화

① 관련디자인의 신규성 적용 시점 명확화 (제4부 제8장 관련디자인)

- (현행) 관련디자인의 출원 전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공지시점과 상관없이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 적용 예외(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미적용)를 받을 수 있음
- (개정) 관련디자인의 신규성 적용 예외 시점을 기본디자인 출원일 이후로 명확히 하고, 신규성 예외주장 기간(6개월)을 넘긴 경우 거절토록 함

② 창작성으로 거절시 구체적인 증거(인용참증) 제시 강화

(제4부 제6장 용이창작)

- (현행) 용이창작 판단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주지형태에 의한 용이창작 규정(법 제33조 제2항 제2호)을 빈번하게 활용
 - * 창작성 관련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특허법원에서 용이창작 판단 근거 요구사례 증가
- (개정) 원칙적으로 용이창작 판단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되, 명백한 주지형태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③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보완

(제5부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현행)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은 서로 같은 상태에서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정)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에도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보완

4]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동일인이 출원하는 경우의 취급 명확화

(제4부 제7장 선출원)

- (현행) 동일인의 선출원 디자인과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 심사시 관련디자인 규정(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하도록 의견제출 통지
- (개정) 동일인 간에도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므로 (1)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후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2)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하나의 출원을 선택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토록 함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중복 출원된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6부 제6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 (현행) 둘 이상의 동일한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선출원을 적용하지 않아 모두 등록결정됨
- (개정)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동일인의 중복 출원임이 명백하고, 심사관이 인지 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6] 부분디자인의 기능적 일체성 판단기준 보완

(제2부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현행)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표현된 경우라도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1디자인으로 인정

- (개정)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해 전체가 아닌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능적 일체성을 인정하도록 1디자인 인정요건 완화

7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표준화된 규격의 개념 구체화

(제4부 제9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현행)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으로 보아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개정) 표준화된 규격의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완

2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1 물품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4부 제1장 성립요건)

- (현행) 물품은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그 외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시멘트,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가루) 또는 입상물(난알 또는 알갱이)의 집합과 같이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개정) 분상물, 입상물이라 하더라도 정형화 또는 고형화되어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

2 부가·보조적인 물품의 결합시 1디자인 인정요건 완화

(제2부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현행)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1디자인으로 인정

- (개정) 떠지나 고정틀 등 부가적인 물품이 ‘케익’에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1디자인으로 인정

3 도면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 추가

(제3부 제1장 출원의 보정)

- (현행)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복수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일부 디자인에서만 전체적인 형상을 구체적으로 도시하고, 그 이외의 디자인에서는 달라진 부분의 도면만 제출하는 출원이 다수 존재
- (개정) 도면을 추가하는 보정이 최초 출원서에 포함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보정인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도록 함

3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화상디자인 심사지침 통합

1 출원공개의 예외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추가

(법 제189조 반영, 제6부 제2장 출원의 공개)

- (현행)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를 국내법에 의한 출원공개로 간주하므로 법 제189조(출원공개の特례)에 따라 출원공개의 예외를 두고 있음
- (개정) 법 제189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특례를 심사기준에 반영

2 출원인코드 명칭을 특허고객번호로 변경

(시행규칙 제3·14·16·22·24·25조 반영, 제1부 제7장 서류의 반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출원인코드’가 ‘특허고객번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디자인심사기준에 반영

* [시행 2016.10.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2016.10.4., 타법개정]

③ 화상디자인 심사지침 통합

(신설, 제6부 제8장 화상디자인 심사)

- '16. 1. 20. 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디자인 심사기준에 통합
-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에 산재되어 있는 화상디자인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

4

심사 실무반영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한 출원 취하시 예외조항 추가

(제2부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제3부 제1장 출원의 보정)

- (현행)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한 출원 취하는 삭제보정으로 할 수 있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취하는 국제사무국을 통한 경정을 통해서만 가능
- (개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복수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삭제보정으로 일부 디자인을 출원 취하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 추가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중 출원서 보정시 예외조항 추가

(제2부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및 제3부 제1장 출원의 보정)

- (현행)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와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의 수가 불일치하는 경우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의 수에 맞춰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음
- (개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복수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와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의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출원서를 보정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 추가

3 출원의 구분을 변경하는 보정시 예외조항 일부 삭제

(제3부 제1장 출원의 보정)

- (현행)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의 구분을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음
- (개정) 관련디자인등록출원과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간 변경하는 보정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도 가능하도록 함

4 기타 미비점 보완 등

-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기능적 특성을 감안하여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함

(제5부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불인정 판단시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불인정하도록 함

(제4부 제4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우선심사 결정 후의 심사착수 시기를 45일로 정정함

(제6부 제4장 우선심사)